

제 478호

1975. 1. 1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904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증개정조례... 3
- 제905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증개정조례 3
- 제906호 : 서울특별시아파트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4
- 제907호 : 서울특별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6
- 제908호 : 환경위생업소 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 ... 8
- 제909호 : 전지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9
- 제910호 : 서울특별시 중학교부시험입학추천방법과 학교급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 9

◎ 훈 령

- 제395호 : 서울특별시 동도급경비사무처리규정증개정규정.....11

◎ 고 시

- 제1호 : 1975년도 세입세출예산고시11
 - 제2호 : 도시계획 (재개발구역및 특정지구정비지구)
지적 (변경) 고시 12
 - 제3호 : 사료성분동무고시 13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5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및 지적승인	17
제 6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및 지적승인	17
제 7 호 :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 지적승인	18
제 8 호 :	사료성분등록고시	19
제 9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24
◎공 고		
제 1 호 :	1975년 하천골재채취허가예정지역공고	26
제 2 호 :	주택개발제한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26
제 4 호 :	서울특별시한강안전관리대공인공고	27
제 5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27
제 6 호 :	1975년도 서울특별시영세기업육성지원자금 집행요령공고	29
제 7 호 :	1975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구조근대화(기업합병 전문회계열화, 시설개체)수출산업화, 지방공업 (토산품개발육성)육성지원자금집행요령공고	40
제 8 호 :	1975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 집행요령공고	69
◎사 명		70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위원 비용변상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5. 1.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하점생

◎ 서울특별시조례 제 904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 개정조례

4 차개정 75. 1. 7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중 "일비 3,000 원" 을 "일비 5,000 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 1. 17

◎ 서울특별시조례 제 905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항 중 "별표 1 에 의한다" 를 "별표 1 에 의하고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의 현업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2 에 의한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로 하고

제 3 조 중 "별표 2 를 "별표 3" 으로 하고 별표 중 "별표 2" 를 "별표 3" 으로 하고 별표 2 를 별첨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지하철본부현업기관근무공무원조정수당지급구분

구분	4급갑 기능직 6등급	4급을 기능직 7등급	5급갑 기능직 8등급	5급을 기능직 9등급	기능직 10등급	기능직 11등급	기능직 12등급	기능직 13등급	고용원
월수당 지급액	21,000 원	19,000 원	17,000 원	15,000 원	14,000 원	13,500 원	13,000 원	13,000 원	13,000 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아파트시세과세 면제에 관한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구자춘인
1975. 1. 17

◎ 서울특별시소례제 906 호

서울특별시아파트시세과세
면제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시민아파트"와 무주택자에
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할 공급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아파트"에 대하
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 (이하 "시세"
라한다)의 과세면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시민아파트"라함은 서울특별
시가 서민주택난 해결과 도시불
량지구의 합리적인 개발을 목적
으로 시비로 건립한 기존아파트
의 건물과그부속토지를 말한다.
2. "아파트"라함은 30가구이상이
동일건물내에서 각기 독립한 주
거생활을 할수있도록 가구당 15평
이하로 구획된 3층이상의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3. "건축주"라 함은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민간 건축주
를 말한다.

제3조 (과세면제대상및제목) ① "아파트"

를 건립한 건축주와 승계취득자에 대하여는 승공검사를 필한날로부터 2년간 다음각호의 시세를 면제한다. 다만, 민간건축주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취득세
2. 재산세
3. 도시계획세
4. 소방공동시설세

② "시민아파트"를 취득한자에 대하여는 전항 각호의 시세를 면제한다.

③ 건축주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한다.

④ 위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중 타 법령에서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된것은 이 조례에서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사무처리의 위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사무는 당해 과세 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한다.

제 6 조 (면제신청) ①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시행 규칙에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기간) ①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제 3조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은 197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되 1977년 12월 31일까지 준공검사를 필한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유기장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구자춘인

1975.1. 17

◎ 서울특별시조례 제 907 호

서울특별시 유기장영업 허가수수료징수조례

제 1 조 (목 적) 이 조례는 유기장법 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영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

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수료의 금액) 유기장영업의 허가종별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 3 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할때 서울특별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허가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액			
종	별	신규허가및소재지 변경허가수수료액	허가사항변경(소재지 변경제외)수수료액
1.	당 구 장	5,000 원	2,000 원
2.	탁 구 장	3,000	1,000
3.	가 원	3,000	1,000
4.	보 오 링 장	10,000	5,000
5.	베 이 비 폴 프 장	5,000	2,000
6.	플 러 스 케 이 트 장	5,000	2,000
7.	서 플 보 오 드 장	5,000	2,000
8.	투 환 장	5,000	2,000
9.	외 전 비 행 기	5,000	2,000
10.	어 린 이 승 마 장	5,000	2,000
11.	실 내 축 구 장	5,000	2,000
12.	모 형 차 유 기 장	5,000	2,000
13.	광 프 연 습 장	10,000	5,000
14.	회 전 의 자	5,000	2,000
15.	실 내 사 격 장	5,000	2,000
16.	전 자 유 기	5,000	2,000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환경위생업소 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구자춘 인

1975.1.17

◎ 서울특별시조례제 908호

환경위생업소영업허가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

환경위생업소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조례제 304 호 1963.6.13)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자춘 인

1975.1.17

◎ 서울특별시조례제 909호

전직대통령의주택에 대한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의거 재산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불균일과세대상) 전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적용세율) 전조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16 조 제 1 항 및 지방세법 제 188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2
2. 가옥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 4 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급일 과세사무는 당해 과세직 책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9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8년 12월 31일 까지 시행한다.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수칙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5 . 1. 2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하정성

서울특별시조례 제 910 호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수칙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4 차개정 1975.1.20

서울특별시 중학교무시험 입학수칙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별표중

1 학군 도봉지역 국민학교남자 및 여자란에 "미양"을 추가하며, 도봉지역 중학교남자 및 여자란에 "창동"을 "도봉"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중학교여자란에 "신경"을 추가하고

2 학군 전농지역 국민학교남자 및 여자란에 "백봉" "군자"를 추가하고, 전농지역중학교 여자란에 "약화"를 "계심"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공동지역중학교 여자란에 "승인"을 추가하고

3 학군 금호지역 국민학교 남자 및 여자란에 "유정"을 추가하고

4 학군 천호지역 국민학교 남자 및 여자란에 "길동"을 각각 추가하고, 송파지역 중학교 남자 및 여자란에 "성문"을 "일신"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6 학군 강남지역 다음에 반포지역을, 반포지역 중학교 남자 및 여자란에 "반포"를 국민학교 남자 및 여자란에 "반포"를 각각 신설하며, 강남지역 국민학교 남자 및 여자란에 "삼성" "원당"을 각각 추가하고 공동지역 국민학교 남자 및 여자란의 "효창"을 각각 삭제하고

7 학군 시흥, 대림지역 국민학교 남자 및 여자란에 "남곡"을 당산, 구로지역 국민학교 남자 및 여자란에 "개봉" "영동" "양동"을 각각 추가하고, 중학교 여자란의 "도립"을 "한강"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공동지역 국민학교 남자 및 여자란의 "영동"을 각각 삭제하고

8 학군 불광지역 중학교 남자란에 "불광"을 국민학교 남자 및 여자란에 "홍은"을 각각 추가하고, 연희지역 중학교 남자란에 "연희"를 불광지역 국민학교 남자 및 여자란에 "경기"를 각각 삭제하고 공동지역 국민학교 남자 및 여자란에 "경기"를 각각 추가하고

9 학군 국민학교 남자 및 여자란에 "개봉"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5 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훈 명

서울특별시 동도급경비 사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5. 1. 9.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서울특별시훈명제 395 호

서울특별시 동도급경비,
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동도급경비 사무처리규
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①항 제 4 호 다음에

제 5 호, 제 6 호, 제 7 호, 제 8 호,

제 9 호, 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운 송 비

6. 연 로 비

7. 공 공 요 금

8. 사 용 로

9. 회 외 비

10. 비 품 비

제 3 조 제 ②항중 "특별판공비"를
"특별판공비 및 회외비"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 호

1975 년도세입세출예산고시

1975 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5. 1. 1.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다	음	도시계획(재개발구역및특정가구 정비지구)지적(변경)고시
회계별	예산액	
총계	126,332,113 천원	1. 서울시고시제 51호(74.4.23)로 지적(변경)고시한 태평로2가 재 개발구역 및 특정가구정비지구중 제1,2지구에 대하여 일부 지구계 를 변경하고 도시계획법제 13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일반회계	72,241,639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중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54,090,474 "	
주택비특별회계	9,264,969 "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	8,895,000 "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1,200,003 "	
건설자재생산비특별회계	694,504 "	
유료도로비특별회계	790,896 "	
시킨화관비특별회계	2,301,000 "	
청소비특별회계	4,861,580 "	
재해구호비특별회계	59,216 "	
수도사업특별회계	15,728,471 "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10,294,835 "	
◎서울특별시고시제 2 호		1975. 1. 7.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재개발구역및특정가구정비지구)지적(변경)고시

구분	구역명	위치	지구	면적	비고
당초	태평로2가1지구	태평로2가 서소문동각일부	재개발구역특정 가구정비지구	7,583 m ²	
변경	"	"	"	7,716 m ²	지구계변경+133
당초	태평로2가2지구	태평로2가일부	재개발구역	8,153 m ²	
변경	"	"	"	8,020 m ²	지구계변경-133

※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중구청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사료성분등록
고시 제 3 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분등록을 고시한다.

1975. 1. 7.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 2 항의

서울특별시장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 료			사 료 성 분 량				유효기간	비 고
				종류	명 칭	용 도	최소량		최대량			
							조단 백질	조단 지방	조단 섬유	조단 회분		
4-51	삼 강 사료공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국 동 518-1116	김은주	배합 사료	어린병아리 배합사료	0~ 2주까지	19.0	3.0	6.0	8.5	75.1.7 지 77.1.6	
4-52	"	"	"	"	중병아리 배합사료	7~ 12주까지	16.0	3.0	7.0	9.0	"	
4-53	"	"	"	"	큰병아리 배합사료	13~ 16 주	13.0	3.0	7.5	9.0	"	
4-54	"	"	"	"	큰병아리 배합사료	17주~ 초 산	12.0	3.0	7.5	9.0	"	
4-55	"	"	"	"	산란초기 배합사료	초 산~ 20 주	15.0	3.0	7.0	13.0	"	
4-56	"	"	"	"	산란중기 배합사료	21~ 35 주	14.5	3.0	7.0	13.0	"	
4-57	"	"	"	"	산란말기 배합사료	36 주 이 상	14.0	3.0	7.0	13.0	"	
4-58	"	"	"	"	부리일터 배합사료	기 4주까지	19.0	3.0	6.0	8.0	"	
4-59	"	"	"	"	부리일터 배합사료	기 1 4주이상	17.0	3.0	6.0	8.0	"	
4-60	"	"	"	"	부리일터 배합사료	기 2 출하 1 주 후부터 하 1 까지	16.0	3.0	6.0	9.0	"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 료			사료성분량				유효기간	비 고
				종류	명 칭	용 도	최소량		최대량			
							조단 백질	조 지방	조 삼유	조 회분		
4-61	삼 강 사료공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중곡동 518-1116	김은주	배합	산란중계	산란중계	16.0	3.0	7.0	13.0	자 지	75.1.7 77.1.6
				사료	배합사료							
4-62	"	"	"	"	육계중계	육계중계	15.5	3.0	7.0	13.0	"	"
4-63	"	"	"	"	갓난송아지	4 ~	20.0	3.0	5.0	8.0	"	"
				배합사료	30 일							
4-64	"	"	"	"	젖새끼	2 ~	19.0	3.0	7.0	9.0	"	"
				배합사료	3개월							
4-65	"	"	"	"	젖새끼	4 ~	16.0	3.0	9.0	9.0	"	"
4-66	"	"	"	"	젖새끼	7 ~	13.0	3.0	10.0	11.0	"	"
				배합사료	18개월							
4-67	"	"	"	"	고구마	4 ~	17.0	3.0	9.0	9.0	"	"
				배합사료	6개월							
4-68	"	"	"	"	고구마	7 ~	14.0	3.0	10.0	11.0	"	"
				배합사료	18개월							
4-69	"	"	"	"	축우용	임신 6	14.0	3.0	10.0	11.0	"	"
				배합사료	개월까지							
4-70	"	"	"	"	축우용	임신 6	15.0	3.0	10.0	11.0	"	"
				배합사료	개월이후							
4-71	"	"	"	"	착유 1	비유량 20 kg 이상	13.0	3.0	10.0	11.0	"	"
4-72	"	"	"	"	착유 2	비유량 20 kg 이상	14.0	3.0	10.0	11.0	"	"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 료			사료성분량				유효기간	비 고
				종류	명 칭	용 도	최소량		최대량			
							조단 배질	조 지방	조 상유	조 화분		
4-73	삼 강 사료공장	서울특별시 성동구동국 동519-1116	김은주	배합 사료	고깃소 전개	고깃소 전개	15.0	3.0	9.0	11.0	자 지	75.1.7 77.1.6
4-74	"	"	"	"	고깃소 배합사료	고깃소 중개	13.0	3.0	10.0	11.0	"	"
4-75	"	"	"	"	고깃소 배합사료	고깃소 후기	11.0	3.0	10.0	11.0	"	"
4-76	"	"	"	"	조 무 우 배합사료	조 무 우	12.0	3.0	10.0	11.0	"	"
4-77	"	"	"	"	갓난돼지 배합사료	돼 중 5-10	19.0	3.0	5.0	8.0	"	"
4-78	"	"	"	"	젓매기돼지 배합사료	돼 중 11-20	18.0	3.0	6.0	8.0	"	"
4-79	"	"	"	"	어린돼지 배합사료	2 ~ 4개월	15.0	3.0	6.0	8.0	"	"
4-80	"	"	"	"	중견 배합사료	돼 지 기 5 ~ 6개월	14.0	3.0	8.0	10.0	"	"
4-81	"	"	"	"	중후 배합사료	돼 지 기 7 ~ 8개월	13.0	3.0	8.0	10.0	"	"
4-82	"	"	"	"	양돈용 배합사료	임신 9개월 ~ 임신	12.0	3.0	10.0	10.0	"	"
4-83	"	"	"	"	양돈용 배합사료	임신 2 개월까지	13.0	3.0	10.0	10.0	"	"
4-84	"	"	"	"	양돈용 배합사료	임신 2 개월이후	14.0	3.0	10.0	10.0	"	"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 료			사 료 성분 량				유효기간	비 고
				종류	명 칭	용 도	최소량		최대량			
							조단 백질	조 지방	조 섭유	조 회분		
4-85	삼 강 사료공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 동518-1116	김은주	배합	포유모돈	포유모돈	%	%	%	%	75.1.7	
				사료	배합사료		15.0	3.0	10.0	10.0	77.1.6	
4-86	"	"	"	"	중 모 돈	중 모 돈	12.0	3.0	10.0	10.0	"	
4-87	"	"	"	"	어분기초	어분기초	50.0	2.0	2.5	20.0	"	
				"	배합사료							
4-88	"	"	"	"	육월분기초	육 월 분	40.0	5.0	3.0	33.0	"	
				"	배합사료	기 초						
4-89	"	"	"	"	우모분기초	우 모 분	80.0	2.0	5.0	5.0	"	
				"	배합사료	기 초						
4-90	"	"	"	"	식 물 성	식 물 성	35.0	3.0	8.0	7.0	"	
				"	박류기초	박류기초						
4-91	"	"	"	"	인삼칼슘	인삼칼슘	-	-	-	95.0	"	칼슘 5% 이상인 13%이상
				"	배합사료	기 초						
4-92	"	"	"	"	양계용농축	양 계 용	16.0	2.0	6.0	12.0	"	
				"	배합사료	농 축						
4-93	"	"	"	"	양돈용농축	양 돈 용	14.0	2.0	6.0	10.0	"	
				"	배합사료	농 축						
4-94	"	"	"	"	숙우용농축	숙 우 용	14.0	2.0	6.0	10.0	"	
				"	배합사료	농 축						

◎서울특별시고시제 5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

가. 변경 조 서

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 9.

서울특별시장

사 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당 초	변경 후	
시 장	영등포구개봉동324-1	1.044 평 (3.445㎡)	300 평 (990㎡)	감 744 평

※ 별첨 : 도면표사와 같음 (도면 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영등포구청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6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 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 9.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 조서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 장	서대 도봉구 미아동 52-1	5,180 ㎡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도봉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7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은명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 9.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 조서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학 교	서대문구대조동 93-10 부근	30,000 ㎡	등명여교교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은명출장소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8 호
 사료 성분 등록 고시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 9 조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5. 1. 10.
 서울특별시장

사 료 성 분 등 록 사 랑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 료			사 료 성 분 량				유효기간
				종 류	명 칭	용 도	최 소 량		최 대 량		
							조 단 백 질	조 단 지방	조 단 삼 유	조 단 회 분	
3-1	영유농장 사료공장	동대문구 신내동 528	김영희	양계용	어린병아리	부화후대략	19.0	3.0	6.0	8.5	75.1.10
				배합사료	배합사료	6 주까지					77.1.10
3-2	"	"	"	"	중병아리	부화후대략	16.0	3.0	7.0	9.0	"
3-3	"	"	"	"	큰병아리	부화후대략	13.0	3.0	7.5	9.0	"
3-4	"	"	"	"	큰병아리	부화후대략	12.0	3.0	7.5	9.0	"
3-5	"	"	"	"	후기	초산후대략	15.0	3.0	7.0	13.0	"
3-6	"	"	"	"	산란초기	20주까지					
3-7	"	"	"	"	산란중계	산란중계	16.0	3.0	7.0	13.0	"
3-7	"	"	"	"	육계중계	육계중계	15.5	3.0	7.0	13.0	"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			사료 성분량				유효기간
				종류	명칭	용도	최소량		최대량		
							조당 백질	조 지방	조 삼유	조 회분	
3-8	영육농장 사료공장	동대문구 신내동 528	김영희	양계용 배합사료	산란중기	초산후대략	14.5	3.0	7.0	13.0	75.1.10
						21~35주 까지					77.1.10
3-9	"	"	"	"	산란말기	초산후대략	14.0	3.0	7.0	13.0	"
3-11	"	"	"	"	부로일러	부후대략	17.0	3.0	6.0	8.0	"
					후기 1	4 주이상					
3-12	"	"	"	"	부로일러	출하1주전	16.0	3.0	6.0	9.0	"
					후기 2	출하시까지					
3-15	"	"	"	축우용 배합사료	차유 1	비유량	13.0	3.0	10.0	11.0	"
3-16	"	"	"	"	차유 2	비유량	14.0	3.0	10.0	11.0	"
						20kg이상					
3-17	"	"	"	양돈용 배합사료	어린 돼지	생후대략	15.0	3.0	6.0	8.0	"
3-18	"	"	"	"	중 돼지 전기	2 ~	14.0	3.0	8.0	10.0	"
						4개월까지					
3-19	"	"	"	"	미임신돈	생후대략	12.0	3.0	10.0	10.0	"
						5 ~					
						9개월부터					
						임신까지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			사료 성분 량				유효기간
				종류	명칭	용도	최소량		최대량		
							조단 백질	조 지방	조 섬유	조 회분	
3-20	영유농장 사료공장	동대문구 신내동 528	김영희	양계용	양계용농축 배합사료	양계용	16.0	2.0	6.0	12.0	75.1.10
				양돈용		양돈용	10.0	3.0	6.0	3.0	77.1.10
3-21	"	"	"	양돈용	양돈용	양돈용	10.0	3.0	6.0	3.0	"
3-22	"	"	"	축우용	축우용	축우용	19.0	3.0	7.0	9.0	"
3-23	"	"	"	축우용	축우용	축우용	16.0	3.0	9.0	9.0	"
3-24	"	"	"	축우용	축우용	축우용	13.0	3.0	10.0	11.0	"
3-25	"	"	"	축우용	축우용	축우용	15.0	3.0	9.0	11.0	"
3-26	"	"	"	축우용	축우용	축우용	13.0	3.0	10.0	11.0	"
3-27	"	"	"	축우용	축우용	축우용	11.0	3.0	10.0	11.0	"
3-29	"	"	"	축우용	축우용	축우용	14.0	2.0	6.0	10.0	"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 료			사 료 성분 량				유효기간
				종류	명 칭	용 도	최소량		최대량		
							조당 백질	조 지방	조 섭유	조 화분	
3-28	영육농장 사료공장	동대문구 신내동 528	김영희	양돈용	양돈용 농축	양돈용 농축	14.0	2.0	6.0	10.0	75.1.10
				배합사료	배합사료	배합사료					77.1.10
3-31	"	"	"	"	채 중 갓난 돼지	5 ~ 10 kg까지	19.0	3.0	5.0	8.0	"
3-32	"	"	"	"	중 퇴 지 후 기	생후대략 7 ~ 8개월까지	13.0	3.0	8.0	10.0	"
3-33	"	"	"	"	임신전기	임신 2개월까지	13.0	3.0	10.0	10.0	"
3-34	"	"	"	"	임신후기	임신 2개월이후	14.0	3.0	10.0	10.0	"
3-35	"	"	"	"	포유모돈	포유 모돈	15.0	3.0	10.0	10.0	"
3-36	"	"	"	"	중모돈	중모돈	12.0	3.0	10.0	10.0	"
3-37	"	"	"	축우용 배합사료	갓난 송아지	생후대략 4 ~ 30일까지	20.0	3.0	5.0	8.0	"

동무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 로			사 로 성분량				유효기간
				종류	명칭	용도	의 소 량		최 대 량		
							조 단 백전	조 지 방	조 설 용	조 회 분	
3-38	영육농장	동대문구 신내동	김영희	축우용 배합사료	고깃소	생후대략	17.0	3.0	9.0	9.0	75.1.10
	사료공장	528			중송아지	까 지					77.7.10
3-39	"	"	"	"	고깃소	생후대략	14.0	3.0	10.0	11.0	"
					큰송아지	까 지					
3-40	"	"	"	"	임신전기	6 개월 까	14.0	3.0	10.0	11.0	"
3-41	"	"	"	"	임신후기	6 개 월 이 후	15.0	3.0	10.0	11.0	"
3-42	"	"	"	"	중 모 우	중 모 우	12.0	3.0	10.0	11.0	"
3-43	"	"	"	특 수 배합사료	인산칼슘 기 초	인산칼슘 기 초	칼슘 25%	인 13%	55.0		"
3-44	"	"	"	"	어분기초	어분기초	50.0	2.0	2.5	20.0	"
3-45	"	"	"	"	육 골 분 기 초	육골분기초	40.0	5.0	3.0	33.0	"
					배합사료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			사료성분량				유효기간
				종류	명칭	용도	최소량		최대량		
							조단 백질	조 지방	조 섭유	조 회분	
3-46	영육농장	동대문구 신내동	김영희	특수	유지박류	유지박류	1.5	90.0	1.0	1.0	75.1.10
	사료공장	528	배합사료	기	초배합사료	기					초

◎ 서울특별시 고시 제 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177 호(62.12.8)로
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도
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
시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게한다.

1975.1.10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정로 1.2 가
옥천동, 교남동, 교북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대문-독립문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L = 720 m

B = 35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공 및 준공예정일 : 74.11.1

~ 75.6.30

6. 사용 및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조서

7.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인 가 증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정로 1·2가, 옥천동, 교남동, 교북동
2. 사업의 종류및명칭: 서대문-독립문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 규모: L = 720 m . B = 35 m
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5. 인 가 번 호: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6. 사업 기간: 74.11.1 - 75.6.30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 첨
8. 재산의 소재지 지번·지목및소유권여의의 권리명세: 별첨

위와같이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

1975. 1. 10

서울특별시

(인 가 조 건)

1. 사업실시완료후 지체없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별첨 계약설계도서(평면도)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 공고제 1 호

1975년하천골재채취허가예정지역공고

서울특별시 1975년 하천골재채취 허가예정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975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하천명 : 한강 (서울특별시 관내)

2. 지역면적 : 8개지역 1,112,300 평
3. 지역별위치도 : 별지도면과 같음.
4. 위치도열람 : 관할구청 또는 출장소

◎서울특별시 공고제 2 호

주택개발재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1. 건설부고시제 145호(74.5.13)로 사업실시계획인가된 북아현제 2의 3 개 주택개발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46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공사 완료 구역 내역

구역번호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6-28	북아현제 2구역	서대문구북아현동	14,989㎡	
7-4	아현제 2구역	마포구아현동·염리동	17,856㎡(15,887㎡)	
8-10	서빙고제 1구역	용산구서빙고동	11,828㎡	
9-17	고척구역	영등포구고척동	28,810㎡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제량 2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개별용지는 공

고로 감음됨을 알려드립니다.

1975. 1. 7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4 호

서울특별시 한강안전관리대공인공고

서울특별시규칙 제 1413 호 (74.11.

2)로 한강안전관리대 지체가 공포된
에 따라 신설된 서울특별시 한강안
전관리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신
조하여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
에 의거 이틀 공고한다.

1975. 1. .

서울특별시장

1. 공인사용일자 : 1975.1.1 00:00

2. 공인의 인영

지 인

제 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62.12.8)

로 고시된 안국동 - 증양청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내에 저촉되는 토지
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의 공람
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 13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학동, 송현

<p>동, 수송동, 견지동</p> <p>2. 사업의 종류및명칭 : 안국동 - 중앙 청간 도로확장공사</p> <p>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도로 B = 30 m , L = 300 m</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p> <p>5. 착수및준공예정일 : 74.12-75.</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토 지조서</p>
----------------------------------------------------------------------------------------------------------------------------------------------------------------------------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	중학동	29-1			29-1	대	5.6	계 동 25-4	최기남외 1	
2	"				28-1	"	30.5	"	"	
3	"				27-5	"	0.7	중학동 27-5	주류업자회	
4	"				27-4	"	16.7	"	"	
5	"				26-4	"	13	"	"	
6	"				25-4	"	4.3	중학동 25-4	박규현외 1	
7	송현동				72-3	"	29.4	송현동 72-3	이민욱외 1	
8	"				60-2	"	83.2	송현동 14	김조보선생	
9	견지동				8-4	"	48.4	견지동 8-4	변호성	
10	"				7-3	"	13.6	"	"	
11	수송동				4-3	"	6.5	"	"	
12	견지동				13-2	"	9.3	견지동 13-2	정인문사	
13	수송동				26-4	"	1.6	"	명호진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4	수송동				27-12	대	0.5		명 호 신
15	"				27-13	도	2.5	수송동 27-13	김 시 달
116	"				27-11	대	16.1	수송동 27-11	국동해운Co
17	중학동				23-7	"	0.2	중학동 23-7	한국빌딩Co
18	"				5-5	"	4.7	} 북 미 합 중 국	
19	상현동				49-1	"	204.7		

◎ 서울특별시 공고 제 6 호

1975년도서울특별시영세기업
육성지원자금집행요령공고

상공부고시 제 10496 호 (74.2.4)

·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요강 · 제 13
조 및 동기업 1332-2049호(74.12.
24)에 의거 1975년도 서울특별시
영세기업육성지원자금 집행요령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1. 15

서울특별시장

1975년도서울특별시영세기업
육성지원자금집행요령

1. 목 적

본 요령은 상공부고시 제 10496호
(74.2.4)에 의하여 75년도 서울
특별시 영세기업육성지원자금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75년도 융자제한

75년도 예정액 97,000천원(운
전자금: 67,000천원. 시설자금:
30,000천원)

3. 용자대상업종 및 지원순위
 제조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영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순위
 는 가~라로 한다.

가. 생활필수품 생산업체

나. 수출품 생산업체

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계열
 화업체

라. 기 타

4. 용자대상업체의 자격

가. 상시종업원 5인이하의 영세기
 업체로서 전 3항(용자대상업종)
 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
 체

나. 특히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업종으로서 전 3항에 해당
 하는 상시종업원 9인이하의 영
 세기업체(단, 상시종업원 5인이
 상 업체는 당시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라야 함)

5. 구청(소)별 용자추천한도액배정
 시장은 전 2항의 용자재원 범위

내에서 각 구청(소)별 영세기업체
 총수에 의하여 추천할 자금의 한
 도액을 각 구청(소)장에게 사전 배
 정한다. (별표 1호)

6. 용 자 조 건

가. 용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나. 용자기간

(1) 시설자금: 1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2) 운전자금: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다. 이 율

(1) 시설자금: 연 10 %

(2) 운전자금: 연 15.5 %

라. 업체별 용자한도액

(1) 시설자금: 500 만원까지
 (기대출 잔액포함)

(2) 운전자금: 300 만원까지
 (기대출 잔액포함)

7. 용자대상업체추천 및 용자절차

가. 구청(소)장은 75.2.20까지 관내
 전 영세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용희망업체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구청(소)장은 전·가·호에 의거 조사된 수용희망업체 중에서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 용자추천원 을 제출받아 전 제 5항의 용자 추천 한도액을 근거로 하여 다음 요령에 의거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75.3.1 까지 관할 국민은행 본·지점장에게 추천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은행 본·지점장은 구청(소)장이 추천한 업체중에서 용자업체와 용자금액을 결정 대출한다. 기 추천한 업체중 용자불가능 또는 포기업체가 발생한 때에는 대체 선정하여 추천한다.

(1) 시설자금: 배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용자한도액을 업체별로 배정 추천한다.

(2) 운전자금: 배정된 한도액의 2 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일괄 추천한다.

다. 구청(소)장은 전 각호에 의거 용자대상 업체를 선정 추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대상업체에게 통보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전호에 의거 추천을 받은 대상업체는 추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은행 본지점장에게 용자신청과 용자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국민은행 본·지점장은 추천된 업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추천 구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소)장은 매 익월 5일까지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용자 및 대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바. 국민은행 본·지점장은 용자추천을 받은 대상업체가 1개월 이내에 대출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자수속을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에도 불구하고 용자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용자결정을 취소하고 이물 신청인과 추천 구청(소)장에게 통보한다.

8. 용자대상 업체의 추천취소

구청(소)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자추천을 취소하고 동 취소액 범위내에서 새로운 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

- 가. 국민은행 본·지점장이 기추천 업체에 대한 용자불능 통보가 있을 때
- 나. 추천된 업체로부터 수용을 포기하였을 때

9. 구청(소)별 용자추천한도액 재조정

시장은 전 7항 가. 나. 호에 의거 용자대상 업체의 추천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기허 배정된 한도액을 소진한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정된 한도액을 재조정하여 타 구로 재배정할 수 있다.

10. 기 타

각 구청(소)장 및 국민은행 본·지점장은 본 집행요령을 널리 주지시켜 영세기업 육성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 33호 (74.2.22.)는 이를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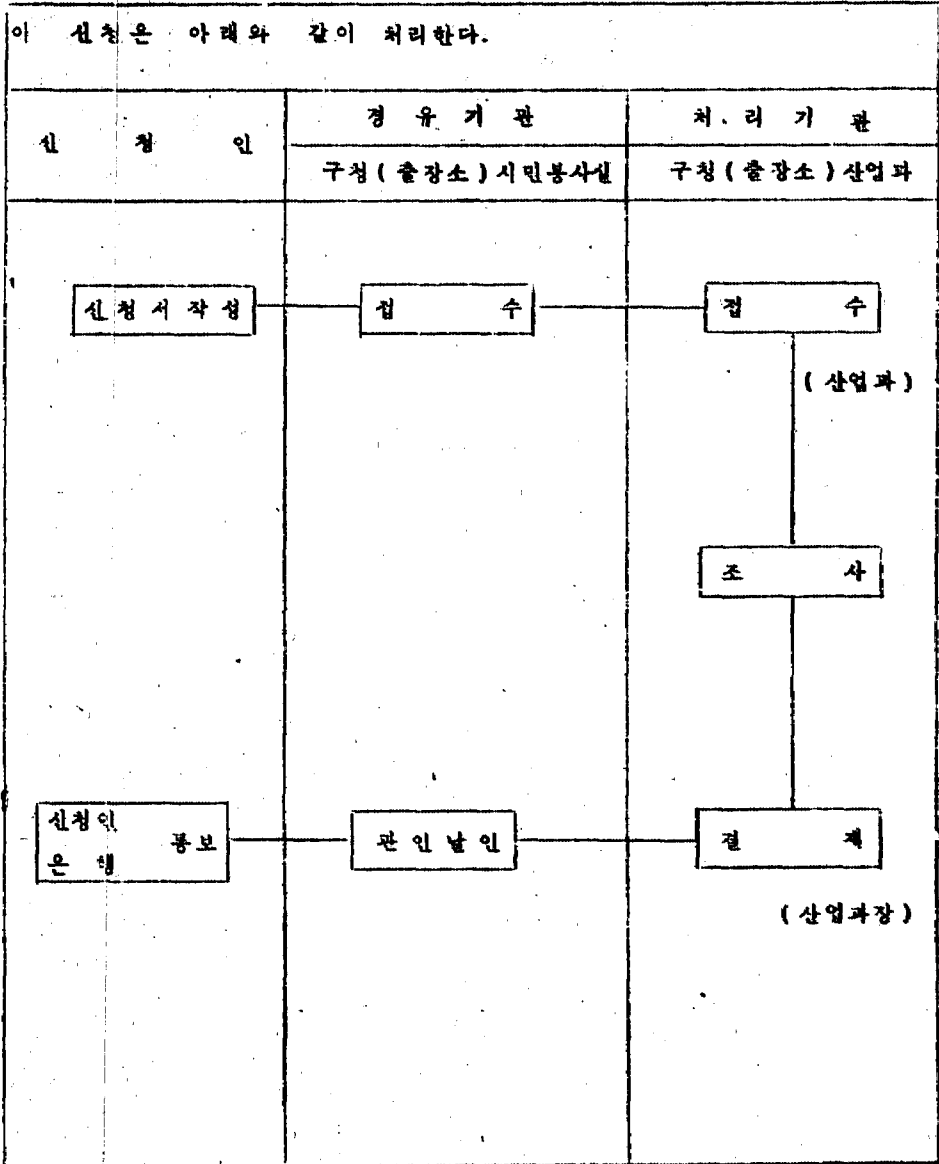
<별표 1>

자 금 배 정 표

(단위 : 1,000 원)

구청(소)별	배 정 액			비 고
	시설자금	운전자금	계	
총 로	1,000	3,000	4,000	
중 구	5,000	11,000	16,000	
동 개 문	2,000	3,000	5,000	
성 동	3,000	8,000	11,000	
성 북	1,000	3,000	4,000	
도 봉	1,000	2,000	3,000	
서 대 문	2,000	5,000	7,000	
마 포	2,000	4,000	6,000	
용 산	3,000	6,000	9,000	
영 등 포	6,000	14,000	20,000	
관 악	1,000	3,000	4,000	
천 호	1,000	1,000	2,000	
은 명	1,000	1,000	2,000	
양 서	1,000	2,000	3,000	
영 동		1,000	1,000	
계	30,000	67,000	97,000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별지 제 4 호>

영세기업자금대출상황보고

자금

197

원액

업종명	소재지	대표자	농 자 추천일자	대출일자	대출금액	회합은별

○ 서울특별시 공고 제 7 호

197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구조근대화

(기업합병, 전문화제역화, 시설개체),
수출산업화, 지방공업(토산품 개발육
성)육성 지원자금 집행요령공고
상공부고시 제 10496 호(74.2.4)
동공고 제 7629 호(74.2.11) 동공
고 제 7643 호(74.3.4) 중소기업육
성자금 운용요강 및 동기업 1332-
2049(74.12.24)에 의하여 75년
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구조근대화
(기업합병, 전문화제역화, 시설개체)
수출산업화, 지방공업육성(토산품, 개
발육성), 지원자금 집행요령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한다.

1975. 1. 15

서울특별시장

1. 지원내용,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2. 용자신청절차

이 요령에 의하여 용자를 받고
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용자신
청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 용자대상업체 선정절차

가. 시장은 수시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용자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용자대상과 용자금액을 결정하고
상공부장관, 중소기업은행 및 해
당업체에 보고(통보)한다.

1) 시설개체

용자신청서와 실태조사서(소
정조사표에 의함)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 부
의하여 용자대상업체의 적격여
부와 용자금액을 결정 배정한다.

2) 수출산업화, 전문화제역화, 기
업합병, 토산품개발육성자금, 용

<p>자수천</p> <p>가) 중소기업육성자금방자추천신청서와 실태조사서를 근거로 각시제발 방자업체의 적격여부와 방자추천금액을 결정추천한다.</p> <p>4. 권3항에 의한 방자대상업체 선정은 수시로 신청에 의하여 배정 및 추천자외 지원재원의 부족으로 방자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방자신청서류에 사유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즉시 반려한다.</p> <p>다만, 추가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때에는 이를 차회의 방자대상에 포함시켜 처리할 수 있다.</p>	<p>5. 서울특별시 재정자금 방자대상 선정심의 위원회운영규정 (72.4.11) 제정은 이 요령에 의한 규정으로 가름한다.</p> <p>5.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공부 고시제 10496 호 및 동공고 제 7629 호 동공고 제 7643 호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공고 제 31 호 (74.2.22) 및 동공고 제 41 호 (74.3.8) 는 이를 폐지한다.</p>
----------------------------------------------------------------------------------------------------------------------------------------------------------------------------------------------------------------------------------------------------------------	----------------------------------------------------------------------------------------------------------------------------------------------------------------------------------------------------------------------------------------------------------------------------------------------------------------------

별첨표 1

75 증 소 기 업

시책별 구분	사 설 개 체	수출산업화	전문화제열화
1.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부고시제 10496 호 ○ " 공고제 7629 호 ○ 서울시공고제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 " ○ " "
2. 자금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 배 자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3. 75 재원 및 지원 예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 2,260,000 ○ 서울 : 621,000 목표 : 31 개 업체 62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 시설 : 1,400,000 운전 : 60,000 ○ 서울 : 선착순 목표 : 30 개 업체 6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 200,000 ○ 서울 : 선착순 목표 : 2 개 업체 40,000
4. 지원 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비 : 30,000 이내 (기대출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 30,000^{이내} ○ 운전 : 20,000^{이내} (기대출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 30,000 이내 (기대출액 포함)
5. 이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 년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 년 10 % ○ 운전 : 년 15.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 년 10 %

자 금 지 원 요 령

1975.1 현재 (금액단위:천원)

기 업 합 병	토 산 품 목 성	시 비 재 정 자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동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동 ○ 상공부공고제 7643 호 ○ 서울시공고제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중소기업상계정자금융용요강 ○ 서울시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자금 ○ 서울시공고제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계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 200,000 ○ 서울 : 선착순 목표 : 2개업체 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 100,000 ○ 서울 : 선착순 목표 : 4개업체 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 55,000 목표 : 11개업체 55,000 ○ 시설 : 4 " 20,000 ○ 운전 : 7 " 3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 30,000 이내 (기대출액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 20,000 이내 (기대출액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 20,000 이내 } 20,000 ○ 운전 : 10,000 " } 이내 (기대출액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 년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 년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 년 10 % ○ 운전 : 년 15.5 % ○ 조합 : 년 12 %

시책별 구분	시 설 개 체	수 출 산 업 화	전 문 화 제 열 화
6. 용 자 기 간	○ 시설 : 8년 이내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시설 : 8년 이내 ○ 운전 : 3년 이내	○ 과 동
7. 내 상 업 종	a. 상공부장관지정 제 1 및 제 2 유형에 해당하는 업 품목생 산업체	b. 과 동	1. 다음 석중중 대 2 유형에 해당 하는 품목생산 업체 가. 금속제품 나. 기계부품 다. 전기기기 부품 라. 수송장비 부품 마. 과학기기 부품
8. 자 격 요 건	1. 중소기업기본법규 정중 중소기업체(제 조업)로서 2. 서울특별시내에 공 장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건립된 협동조합가입자 단, 해당업종의 협동조합	1. 과 동 2. 과 동 3. 서울특별시 수출 품생산지정업체로서 가. 최근 1년간 1만불이상의 수 출실적이 있고 향후 계속수출이 가능한 자	1. 과 동 2. 과 동 3. 단일전문화품목 의 년간수주 외 존도 가. 20% 이상인 업체로 1개의 도기업체와 1년 이상 제 열 화

기 업 합 병	보 산 품 목 성	시 비 계 정 자 금
○과 동	○과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5년 ○운전: 3년 ○조합: 1년아내
<p>1. 다음 업종중 제1및 제2류형에 해당하는 품목생산업체</p> <p>가. 금속 및 금속제품</p> <p>나. 기계</p> <p>다. 수송장비</p> <p>나. 전기기자</p> <p>마. 섬유</p> <p>바. 식품가공</p> <p>사. 화학석탄제품</p> <p>아. 잡화제품</p>	<p>1. 토산품제조업체로 상공부고시제 9679 호에 지정된 품목 생산업체</p>	<p>1. 광업, 운송업 및 상업 기타서비스업울 제외한 제조업체</p>
<p>1. 과 동</p> <p>2. 과 동</p> <p>3. 석정규모와 원가절감 생산성향상등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2개이상외 동종업종기업이 1개의 법인기업으로 합병하는 업체</p> <p>4. 합병후 1년이내</p>	<p>1. 과 동</p> <p>2. 서울특별시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가입자 단, 해당업종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 중소기업 기본법규정, 중소기업법 (제조업)</p> <p>2. 과 동</p> <p>3. 과 시설계좌 * 4 *</p> <p>합과 동</p> <p>4. 과 시설계좌 * 5 *</p> <p>합과 동</p>

구분 \ 시책별	시 설 개 체	수 출 산 업 화	전 문 학 계 열 화
	<p>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신규발주업체는 시설완료와 동시에 공장등록 및 협동조합가입이행자제 출자로 하고 섬유류제품생산자중 상공부장관이 정한 섬유시설등록요령(상공부공고제 6238호기.1.6)에 외거등록을 요하는 자는 동요령에 외거등록을 필한자라야하며</p> <p>3. 서울특별시 수출품 생산지정업체 및 동지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업체중 노후시설(건물기계)의 개체보완 및 시설의 확장을 착수하고 있거나 동시설계획이 확정된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p>	<p>나. 향후 1년 이내에 2만불이상 수출이 가능한자</p> <p>4. 최근 1년 이내에 신규수출상품 생산자로서 향후 계속 수출이 가능한자</p> <p>5. 우수특허품으로 수출실적이 있고 향후 계속 수출이 가능한자</p> <p>6. 수출용원부자재 생산업체로 최근 1년간 공급실적이 있고 향후 1년내에 2만불이상 공급이 가능한자</p> <p>7. 상공부에서 완구 수출품생산표준화 공장으로 지정된 업체로 수출실적이 있고 향후 계속 수출이 가능한자</p> <p>8. 파 " 4 " 항과동</p> <p>9. 파 " 5 " 항과동</p>	<p>판계가 지속된 업체</p> <p>4. 특정모기업의 계열화업체로 선정되어 향후 1년이상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p> <p>5. 전 1, 2 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의 모기업으로서 세제열외가 절감 품질향상등을 지원코자 하는 업체(단 이 경우 자금은 모기업을 통해 세제열외에 사용되어야 한다)</p> <p>6. 공장표준화법에 외거 한국공업규격(K.S)표시 특허품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p> <p>7. 파 시설개체</p>

기 업 합 병	토 산 품 육 성	시 비 재 정 자 금
<p>법인업체로 전 1 학과 각은 경영합리화가 기 대되는 업체</p> <p>5. 과 시설개체 " 4 "</p> <p>항과 동</p> <p>6. 과 시설개체 " 5 "</p> <p>항과 동</p>	<p>3. 상공부지정 토산품 생산지정업체</p> <p>4. 과 시설개체 " 4 "</p> <p>항과 동</p> <p>5. 과 시설개체 " 5 "</p> <p>항과 동</p>	

시책별 구분	시 설 개 체	수출산업화	전문화제열화
	<p>업체</p> <p>가. 새로운 시설투자에 의하여 생산규모를 확장하려는 업체</p> <p>나. 노후시설의 개체에 의해 생산성의 향상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이 기대되는 업체</p> <p>다. 시설투자적정화에 의해 수출의 계획적인 증대 또는 새로운 수출및 전환이 가능한 업체</p> <p>라. 신규발주업체로서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생산시설(건설및 기계)을 착수하고 있거나 동시설계되어</p>		<p>" 4 " 항과 동</p> <p>8. 과 시설개체</p> <p>" 5 " 항과 동</p>

기 업 합 병	토 산 품 육 성	시 기 계 정 자 금

시책별 구분	시 설 개 체	수 출 전 문 화	전 문 화 계 열 화
	<p> 확정된 업체 4. 위 각항의 대 상업체로서 공해방 지법 제4조에 의 한 보건사회부장관 의 배출시설허가 대상업체는 동허가 를 필한 업체라야 하며 5. 대통령령 제 6502 호 경제안정과 성 장에 관한 긴급명 령에 의한 제조공 장설치조정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 고대상업종은 동신 고를 필한자라야한다. </p>		
<p> 9. 지원 우선순위 </p>	<p> 1. 노후시설의 개체 2. 시설의 적정규모 확충 위한 확장 3. 수출업체 4. 고용증대가 기대되 는 업체 5. 기 타 </p>	<p> 1. 원자재의 수입의 준도가 낮은 업체 2. 수출에의 기여도 가 큰 업체 (실적및 계획액순) </p>	<p> 1. 수주의준도가 큰 업체 2. 수출업체 3. 고용증대가 기 대되는 업체 4. 기 타 </p>

기 업 합 병	토 산 품 육 성	시 비 제 정 자 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류의 중소기업상호 간의 합병업체 2. 수출업체 3. 수평적 합병업체 4. 합병후의 기업형태가 주식회사인 업체 5. 고용증대가 기대되는업체 6. 기 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업체 2. 노후시설의 교체 3. 고용증대가 기대되는 업체 4. 기 타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 배경 신청서 추천							처리기간 배정 15일 추천 10일	
신 청 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번호		
	③기업체명							
	④주소							
사업제규모	⑤상시종업원		⑥자산총액				원	
대상업종과품목	⑦업종		⑧품목					
⑨자적요건								
신청자금	자금구분	⑩총소요액	⑪용자신청액	⑫비율				
	시설자금							
	운전자금							
위와 같이 공고 제 호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 용자 배경을 신청합니다 197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 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번호	서류명	수량	시책별					비 계정
			시설 개체	기업 합병	전문 계열화	수출 산업화	토산물 육성	
1	사업계획서	1부	○	○	○	○	○	○
2	영업감찰	1부	○	○	○	○	○	○
3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내분)	1부	○	○	○	○	○	○
4	공장등록증명(시설업체는 가동과 동시 제출각서)	1부	○	○	○	○	○	○
27D-01-91E 74.12.24승인			150mmX268mm (신문용지 54용매)					

번호	서류명	시 책 별					
		시 개	업 개	전 문 계	수 출 업	토 산 업	시 비 제
5	협동조합가입 확인서 (신설업체는 가동과동시 제출각서) 1부	○	○	○	○	○	○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	○	○	○	○
7	섬유류생산업체일경우 섬유시설등록필증 1부	○	○	○	○		○
8	공장건축허가통지서, 대지소유권입증각 방법설계도, 도급계약서 혹은 견적서시방서 1부	○	○	○	○	○	○
9	기계구입계약서 또는 주문기 1부	○	○	○	○	○	○
10	운전자급 사용계획서 1부				○		○
11	수출제외 (수출대금입금증명, 수출완 료증명, 기타입증서류) 1부	수출 제외 우○	과동 ○	과동 ○	○	수출 제외 우○	과동 ○
12	수출제외 (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 서 기타 입증서류) 1부	"	"	"	"	"	"
13	생산실적증명 (전년도 현년도) 각 1부	○	○	○		○	○
14	공해배출시설허가증사본 (대상업체) 1부	○	○	○	○	○	○
15	제열화업체 납품증명서 1부			○			
16	제조공장설치조경시행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신고대상업체 신고필증사본 1부	○	○	○	○	○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시민과	서울특별시 공업과
신청서작성	접수 시민과	접수 공업과
		검토 서류미비시 보완조치
		현저확인
		심의위원회부의 (비정신청시)
신청인 통보 은행	확인발인 시민과	결재 배정 - 부서장 추천 - 국장

사 업 계 획 서

1. 기업체 개요 (시책명:)

가. 기업체명:

나. 소재지: (본사) (TEL)

(공장) (TEL)

다. 대표자:

라. 업 종: 생산품명:

마. 기업형태: 합명, 합자, 주식, 유한, 개인

바. 창립년월일

사. 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년월일: 년 월 일 (제 호)

아. 토산품 생산업체 지정년월일: 년 월 일 (제 호)

자. 공장등록년월일: 년 월 일 (제 호)

차. 가입한 협동조합 (명칭):

(가입년월일): 년 월 일

카. 자산종액: (197 년 월 일 현재)

유동자산 원

고정자산 원

기 타 원

계 원

다. 종업원수 (197 년 월 일 현재)				
구 분	상 시	임 시	계	비 고
사 무 직	명	명	명	:
기 술 직				
기 타				
계				

파. 기업합병 여부; 합병(등기)년월일;
 피합병회사명;

하. 사업개요(기업체, 연혁, 기타 전반적인 사항)

※ 생산공정도

(나) 사 설								
용 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단가	금액	신증설개보수 여부

(2) 신 . 증설계획

구 분	건 물		기 계		소 요 자 금 조 달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총소요액	과거부담	용자신청액
신 증 설							
개 보 수							
계							

(가) 전물시설내역												
용도	토지			현보유			신증설및개보수				자금조달	
	소재지	면적	소유자	구조	면적	소유자	구분	구조	면적	단가금액	자기부담	용자액

(나) 기계시설내역												
용도	시설명	현보유		신증설및개보수				자금조달				
		규격	수량	구분	규격	수량	단가금액	자기부담	용자액			

4. 자기자금 조달방법

5. 운전자금 사용계획 (운전자금융자에 한함)

구분	수량	금액	산출근거	비고
원부자재, 인건비, 관리비				별지작성첨부

6. 생산능력 및 생산판매계획										
품명	규격	단위	생산능력		생산및판매계획 (전망)					
			수량	금액 천원	1974 년 도					
					생 산		국내 판매		국외판매(수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생산 및 판매 계획 (전 망)						
1975 년 도				1976 년 도		
생 산		국내 판매		국외판매(수출)		총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천원		천원		천원	

7. 생산 및 판매실적

품 명	규 격	단 위	1974 년 도					
			생 산			판 매		
			수 량	금 액	단 위	수 량	금 액	단 위
					천원		천원	\$

1975 년도 (완료)						1975 년도 (진행)					
생 산			판 매			생 산			판 매		
수 량	금 액	단 위	수 량	금 액	단 위	수 량	금 액	단 위	수 량	금 액	단 위

첨부서류 1. 수출실적증명 (수출대금, 입금증명, 수출완료증명, 기타 입증서류)
 2. 수출계획증명 (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기타 입증서류)

8. 표 목

(1) 시설전생산동료

(단위:천원)

종 명	구 조	단 위	생 산		관 령			
			수 량	금 액	국 내		국 외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 시설부생산동료

(단위:천원)

종 명	구 조	단 위	생 산		관 령			
			수 량	금 액	국 내		국 외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7. 가득액 및 물제산서									
수 출				수 입				가득액	가득율
품명	수량	단가	금액	품명	수량	단가	금액		
<p>(1) 가득액 : 수출금액 (P.O.B) 또는 균납금액 ~ 수입금액 (C.I.F)</p> <p>(2) 가득율 = $\frac{\text{가득액}}{\text{수출금액 (Hcralue)}} \times 100$</p> <p style="text-align: center;"><u>제품납품실적 (전문화계약화자금에 한함)</u></p>									
제품명	197 . . . ~ 197 . . .				197 . . . ~ 197 . . .				
	생산실적	납품실적	납품모기업	수주율	생산실적	납품실적	납품모기업	수주율	

10. 차 입 금 내 용

차입은행	시책별	자금구분	당 초 차입금	잔 액	기 인	연체여부
중소기업은행		시설 운전				
타 행						
계						

11. 담 보 물

구 분	소재지	지목또는 구조	면 적	소유자	평 가 액		기 설 정 액		담보여력
					단 가	금 액	순 위	실 정 액	

* 구분은 토지건물등 담보물건 표시

12 . 소요시설이 긴급을 요하는 사유

13 . 소요시설의 추진상황

14 . 기타 특기사항

1975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기업체명 :

대표자 :



대 차 대 조 표						
(75. 현재) 기업체명 :						
과	목	금	액	비	고	과
과	목	금	액	비	고	과
(D) 유 동 자 산						一. 부 채
당 과 자 산	1. 현금과예금					(1) 유 동 부 채
	2. 받을어음					1. 지 급 어 음
	3. 의상대출금					2. 의 상 매 입 금
	4. 유가증권					3. 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5. 재 품					4. 타행 " "
	6. 반 재 품					5. 어 지 급 금
	7. 원 재 료					6. 총 당 금
	8. 재 공 품					7. 미 불 입 금
	9. 저 장 품					8. 전 수 금
	10. 주주입원중임원 의 단기채권					9. 예 수 금
	11. 전 불 금					10. 주주입원의 단기채무
	12. 예치보증금					11.
	타 13. 수입위탁금					12.
(E) 고 정 자 산					13.	
유 형 고 정 자 산	1. 전 불					(II) 고 정 부 채
	2. 구 축 물					1. 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3. 기 계 장 비					2. 타행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선 박					3.
	5. 차량과운반구					4.
	6. 공구기구와비품					5.
	7. 토 지					(III) 부 채 총 계
	8. 건설가계정					二. 자 본
	9.					(I) 자 본 금
	10.					1. 수권주식(주)

과 목	금 액	비 고	과 목	금 액	비 고
무형고정자산	11. 특허권		2. 미발주식(주)		
	12. 광업권		3. 발행주식(주)		
	13. 어업권		(H) 잉여금		
	14. 전세권		유 보 자 산	1. 자본준비금	
	15.			2. 이익잉여금	
	16.			3. 재평가적립금	
투자자산	17. 투자유가증권			4. 이익준비금	
	18. 출자금			5. 임의적립금	
(H) 이연계정				6. 당기말미처리 이익잉여금	
1. 창업비			7. 이월이익잉여금 기말잔액		
2. 전불비용			↳ 당기순익금		
3. 전설이자			(H) 자본총계		
4. 시험연구비					
5.					
(H) 자산총계			(H) 부채외자본총계		
임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주: ① 받을어음과 외상대출금은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계상할 것.
② 유형고정자산은 감가상각 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계상할 것.

각 서

근번 폐사는 귀사가 배정 (추천 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용자받기 위하여 용자배정 (추천)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이 자금을 용자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단히 할때에는 귀사의 용자취소 조치는 물론 기타 여하한 행정조치가 있더라도 이를 하등의 이의없이 감수하겠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준 수 사 항

가. 이 자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용자기관의 승인없이 타목적에 유용하거나 전용하지 아니한다.

나. 업체의 이전, 양도, 전출 (타행정구역), 대표자변경 및 휴업, 폐업 등 생산품 변경등 업체의 일체 변동사항은 이를 즉시 관할구청에 신고한다.

다. 매월의 사업계획 대 실적보고서 및 생산동태보고서를 매인월 3일 까지 인번도의 수출계획보고서를 매년 12.10까지 각각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제출한다.

라. 기타 각종 행정지시의 성실한 이행은 물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한다.

1975.

업체소재지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서울특별시 공고 제 8 호

1975년도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
사업성채정자금집행요령공고

197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사업 지정자금 집행요령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 운용요강 제
3조제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1. 15.

서울특별시

1. 재 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재정자
금 대출잔액 및 동 대출금중 회
수자금

2.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한 중
소기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공장
등록을 필한 업체중

나.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가입자로 한다.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
하여 조합가입이 불가능한 업종
생산자 및 동법시행령 제 4 조
(업종분류) 별표분류에 해당되

지 아니하는 업종생산자는 협동
조합 가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다. 공해방지법 제 4조에 의한 보
건사회부장관의 배출시설 허가대
상업체는 동허가를 필한자야
하며,

라. 대통령령제 6502 호 (73.2.16)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경
령에 의한 제조공장설치 조정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상
공부장관에게 신고대상업종은 동
실고를 필한 자라야 한다. (기
재설치의 경우)

마. 광업, 운송업 및 상업 기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
한다.

3. 자금의 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4. 지원내용

가. 지원한도액 : 20,000,000 원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포함)

(1) 운전자금 : 10,000,000원이내
금리 : 년 15.5%

용자기간 : 3년 (6개월거치
2년 6개월분할상환)

(2) 시설자금 : 20,000,000원 이내
금 리 : 년 10%

용자기간 : 5년 (1년거치 4
년반기별 분할상환)

5. 신청서류

신청서 (산업국 공업과에서 배부)
및 관계증빙서류 각 1부

6. 신청기간 : 수시

7. 신청할 곳

서울특별시 산업국 공업과

8. 지원대상 결정

가. 실태조사와 서울특별시 재정자
금 용자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물 거쳐 용자대상과 용자금
액을 결정하여 중소기업 은행장
및 당해업체에 통보한다.

나. 전항에 의한 용자대상업체 선
정은 용자신청자가 있을때마다
수시 선정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

2. 이 요령시행과 동시 서울특별시
공고제 32호 (74.2.22)는 이물
폐지한다.

사 령

◎ 1975.1.1.

서대문구 지방행정 이 영 수
수도사업소 서 기
연료과파견근무를 명함.

(75.1.1-75.3.31)

성북구 지방행정 김 정 상
수도사업소 서 기
방호담당관실파견근무를 명함.

(75.1.1-75.3.31)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원 채 희 관
농림기원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라 명 진

한강안전관리대요원 (3급을
상당) 에 임함.

1호봉을 급함.

한강안전관리대장에 포함.

◎1975.1.4.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조 중 완
용 산 구 지방행정사	유 명 수
관 광 과 지방행정주사보	이 병 태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보	조 철 수
공무원교육원	박 정 용
성 부 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길 배

세마울노임소득사업추진본부 파견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서기관	한 남 영
교 주 부	

세마울노임소득사업추진본부 파견근무를 명함.

세마울노임소득사업추진본부 담당관을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사	박 해 림
(사무계장) 사무관	

세마울노임소득사업추진본부 파견근무를 명함.

세마울노임소득사업추진본부 노무관리반장을 명함.

행 정 과 지방행정사	송 수 성
주 사	

세마울노임소득사업추진본부 파견근무를 명함.

세마울노임소득사업추진본부

지도감독반장을 명함.

◎1975.1.8.

위생연구소 지방보건 (식음료과과장) 연구관	신 정 배
-------------------------	-------

위생연구소 수질공해과장에 포함.

위생연구소 지방약무 (수질공해과과장) 기 관	김 식 주
--------------------------	-------

위생연구소식음료화학과장에 포함.

위생연구소 지방보건 (세균과과장) 기 관	이 민 희
------------------------	-------

위생연구소천가물과장에 포함.

위생연구소 지방보건 (세균과과장) 연구사	원 재 은
------------------------	-------

위생연구소세균과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1975.1.10

건설행정과 지방계획기	김 인 석
-------------	-------

부지를 명함.

5호봉을 급함.

중구근무를 명함.

◎1975.1.13

진 추 과 지방진추 (미면계장) 기 관	장 기 찬
-----------------------	-------

영동출장소근무를 명함.

조경과(고층 건물건설담당부과) 과장	지 방 진 추 보	면 영 진
---------------------	-----------	-------

<p>건축과미관계장에 포함. 영동출장소(지부대리) 지방건축사 동대문구근무물 명함.</p>	<p>이 전 순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동포병원근무물 명함.</p>
<p>◎1975.1.14 건설행정과 기한부지방 그지을 면함. 방기제기원</p>	<p>유 강 근 지방보건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마포구보건소근무물 명함.</p>
<p>◎1975.1.15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물 명함.</p>	<p>노 은 정 노 은 정 포 장 과 지방토목 기사보 김 용 주 연료과파견근무물 해제함. 보건예방과 지방약무 기원보 황 덕 주 연료과파견근무물 해제함.</p>
<p>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종로구보건소근무물 명함.</p>	<p>박 철 구회정리1과 지방토목 기원 김 재 호 연료과파견근무물 해제함.</p>
<p>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동포구보건소근무물 명함.</p>	<p>장 인 수 성 북 구 지방행정 주사보 허 진 연료과파견근무물 해제함. 성 북 구 지방행정 주사보 백 영 기 연료과파견근무물 명함.</p>
<p>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동부병원근무물 명함.</p>	<p>이 성 희 운수 2 과 지방행정 주사 홍 한 선 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제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 를 해제함.</p>

<p>◎1975.1.18</p> <p>주택행정과 지방행정 주사보 정구원</p> <p>운수 2과파전근무를 명함. (75.1.19-75.4.18까지)</p>	<p>시장개발 지방행정 담당관실 주사 의 상 용</p> <p>새마을지도과 (내무부새마을 상황실)파전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p>	